

변경 대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PowerUp 블루칩증권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혼합]

2. 주요 변경내용

-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
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변경에 따른 변경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0 년 05 월 07 일

4. 대비표

[신탁계약서]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
제 10 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<u>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~6.(생략)</p> <p>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<u>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 (“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”라 한다. 이하 같다)를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<u>고객의 성명 및 주소</u></p> <p>2. <u>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</u></p> <p>③ <u>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.</u>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<u>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“전자증권법”이라 한다)」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.</u></p> <p>1~6.(종전과 동일)</p> <p>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<u>전자증권법 제 2 조제 3 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(이하 “수익증권고객계좌부”라 한다)를</u>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</p> <p>1. <u>고객(이하 “투자자”라 한다)의 성명 및 주소</u></p>

	④수익증권투자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("실질수익자"라 한다. 이하 같다)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,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.	2. <u>수익증권</u> 의 종류 및 수 ③(삭제) ④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.
제 11 조(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)	(생략)	(삭제)
제 12 조(수익 증권의 재교부)	(생략)	(삭제)
제 13 조(수익 증권의 양도)	①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,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. ②수익증권투자자자계좌부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.	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 30 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, 수익증권고객 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. ②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 31 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.
제 14 조(수익자명부)	⑤한국예탁결제원은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 1. <u>실질수익자</u> 의 성명,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. <u>실질수익자</u> 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("실질수익자명부"라 한다 이하 같다)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<u>수익자</u> 및 <u>실질수익자</u> 의 성명과 수익권의 종류 및	⑤한국예탁결제원은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<u>수익자</u>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 1. <u>수익자</u> 의 성명,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. <u>수익자</u> 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("수익자명부"라 한다 이하 같다)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<u>수익자</u> 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 ⑦(삭제)

	<p>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,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.</p>	
제 17 조(투자대상자산 등)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<u>투자대상</u>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	<p>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원화로 표시된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<u>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</u>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
제24조(수익증권의 판매)	<p>② <u>투자자</u>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.</p>	<p>② <u>고객</u>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.</p>
제 26 조(수익증권의 환매)	<p>④ 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.</p> <p>⑤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⑥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본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.</p>	<p>④(삭제)</p> <p>⑤(삭제)</p> <p>⑥(삭제)</p>
제 27 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	<p>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(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부터 제2영업일(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	<p>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2영업일(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

<p>제38조(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)</p>	<p>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(소각)하여야 한다.</p>	<p>④(삭제)</p>
<p>제 44 조(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)</p>	<p>①~③ (생략) <신설></p>	<p>①~③ (현행과 동일) <u>④제 1 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 39 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, 이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단,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, 또는 법 제 64 조제 1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 1. 보상금액: 제 39 조 3 항 각호에 따른 <u>보수율 *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* 제 2 호의 대상기간 일수</u> 2. 대상기간: 변경시행일로부터 6 개월간. 단, 신탁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고 변경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. 3. 지급시기: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시행일 ⑤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제 4 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p>
<p>제48조(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)</p>	<p>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제 1 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. 1. <u>소각</u></p>	<p>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제 1 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. 1. <u>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</u></p>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변경에 따른 변경		
투자위험등급	3 등급 (다소 높은 위험)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	<u>2 등급 (높은 위험)</u>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<u>2 등급</u> 으로 분류하였습니다.
[요약정보]	투자비용 (생략) 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 (생략) 운용전문인력 (생략)	투자비용 (동종유형총보수,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업데이트) 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 (업데이트) 운용전문인력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변경에 따른 변경		
투자위험등급	3 등급 (다소 높은 위험)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	<u>2 등급 (높은 위험)</u>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<u>2 등급</u> 으로 분류하였습니다.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(추가)	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0 년 05 월 07 일 -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 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변경에 따른 변경 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
제 2 부	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
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(생략)	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<p>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</p> <p>가. 자집합투자기구</p> <p>(1) 투자대상</p> <p>(3) 기타 제한 사항</p> <p>1)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</p> <p>-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제 1 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.</p> <p>1. 소각</p> <p>2.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</p> <p>나. 모집합투자기구</p> <p>(1) 투자대상</p> <p>하나 UBS 태극블루칩증권모투자신탁[주식]</p> <p>7.집합투자증권등 :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,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</p> <p>하나 UBS 단기증권모투자신탁(제 1 호)[채권]</p> <p>6.집합투자증권등 : 법 제 110 조에 의하여</p>	<p>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</p> <p>가. 자집합투자기구</p> <p>(1) 투자대상(<u>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</u>)</p> <p>(3) 기타 제한 사항</p> <p>1)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</p> <p>-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제 1 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.</p> <p><u>1.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</u></p> <p>2.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</p> <p>나. 모집합투자기구</p> <p>(1) 투자대상(<u>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</u>)</p> <p>하나 UBS 태극블루칩증권모투자신탁[주식]</p> <p>7.집합투자증권 :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(<u>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.</u>),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</p> <p>하나 UBS 단기증권모투자신탁(제 1 호)[채권]</p> <p>6.집합투자증권등 : 법 제 110 조에 의하여</p>

	<p>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,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</p>	<p>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(<u>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.</u>),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</p>
<p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p>	<p>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<u>11.57%임에 따라 6 등급 중 3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다소 높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</u></p>	<p>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<u>17.65%임에 따라 6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높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</u></p>
<p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p>	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생략) 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(생략)</p>	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동종유형총보수, 기타비용, 총보수·비용,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) 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(업데이트)</p>
<p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p>	<p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(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-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(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)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, 계좌의 명의변경, <u>실물양도의 방법으로</u>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</p>	<p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(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-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(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)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, 계좌의 명의변경, <u>양도(전자증권법 제 30 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)의 방법으로</u>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</p>

		있습니다.
제 3 부 집합투자기구 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(생략)	(업데이트)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생략)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업데이트)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